

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조 중 “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”를 “충청북도 저수지·댐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”로 한다.
- 안 제3조제3항 “제4호”를 “제3호”로 한다
- 안 제4조 중 “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”를 “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”로 한다.